

# 구인난 속 직업소개소 횡포에 우는 선주들

### 선장·선원 임금 두 배 오르고 소개비 명목 비싼 수수료 요구에 '이중고' 인력난 악용해 선급금까지 요구... "사기 중개로 5억원 떼었다" 호소도 목포·신안·영광 선주들 울며겨자먹기 이용... "강력 단속 해달라" 호소연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 선주(船主)들이 직업소개소의 횡포에 울고 있다.

목포, 신안 등 전남지역 선주들은 힘든 선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소개소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업소개소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선급금까지 요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1일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에 따르면 최근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근해에서 배를 탈 선장·선원의 임금이 두 배 넘게 올랐다.

승선 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선원 임금은 5년 전만 해도 2000만원 선이었는데 올 들어 3000~5000만원 수준으로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선장

임금 또한 5000~7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뛰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내야 하는 소개비도 급증했다. 소개비는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주는 구조로 인건비가 상승할수록 함께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상 직업소개소는 구직자가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3개월 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의 금액을 구인자에게 소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직업소개소는 합법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결국 인력을 구하는 선주가 선장은 1000여만원, 선원은 500여만원씩 수수료를 줘야 하는 꼴이다.

근해에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9.77t 어선 한 척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포함해 선원 7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주들의 이야기다. 보통

선원을 구할 때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

배 한 척을 띄우는 데 인건비로 10개월 기준 4억원씩 소요되는 데 더해 소개비로만 4000만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선주에게 '선급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하는 직업소개소도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급금은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에게 줄 임금 등을 미리 받는 행위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직업소개소 측에서 직접 선원에게 임금을 분배할 것이라며 소개비와 임금 모두 선불로,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선주들 주장이다.

선주들은 선원들이 부족하면 당장 배가 출항을 할 수 없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역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주고 나면, 선원이 도망가 버렸다면서 돈조차 돌려주지 않는 '사기 중개'까지 빈발하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장근배(58)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 회장은 "선급금을 떼었다며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고소·고발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 받은 적은 없다"면서 "39년동안 9.77t 어선 두 척을 운용했지만 최근 사기 중개로 5억원의 돈을 떼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 회장은 "선주들은 개별적으로 인력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목포시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강력한 처벌을 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도 연간 2회씩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128곳을 단속하고 있으나, 올해 적발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결과 근로계약서 체결 전 선급금을 받았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발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거레가 선주와 소개소 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불법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광주·전남 60여명 검거

광주·전남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61명(57건)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착취물이 30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7건(29.8%), 불법 성영상물 10건(17.5%)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등 친절과 상냥함으로 접근하는 일명 '그루밍'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약 1000여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 수사 결과 전국에서 433명(201건)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담양 세모녀 비극' 두 딸 살해 엄마 징역12년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세 모녀 비극'의 당사자인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월 2일 말게 20년간 알고 지낸 B씨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해 어려운 환경에서 두 딸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숨지기 전 발견돼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첫째 딸과 달리 둘째인 10대 딸은 범행

당시에서야 A씨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A씨가 사기사건의 피해로 전 재산을 잃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한 절망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24세, 17세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A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을 속여 150여만원을 가로챈 B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물 아껴 씬시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1일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열린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에서 주민과 학생들에게 홍보 전단지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성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청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사진파일 형태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사실·후보자비방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카드뉴스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며 일부 다른 내용도 인지과정에서 허위임을 인지 할 수 없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직장 동료 아내 성폭행 30대 징역 7년 선고

같이 여행을 간 직장동료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

역 7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시설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양의 한 펜션에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B씨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